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 제13조의3의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 구성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총수를 15명으로 확대

나. 심의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 부여

-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

다. 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간주
-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를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을 “사람으로 아동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3(중전의 제13조의2)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중전의 제13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안전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
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
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
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신 설>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
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
당하였던 사람

<신 설>

<신 설>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
사의 -- 사람으로 아동 관련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
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
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
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4. (생 략)

⑤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생 략)

풍부한 사람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

----- 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

② -----

--.

1.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

2.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3.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3(소위원회) ① ~ ③ (생략)</u> <u>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u> ⑤ (생략)	<u>제13조의2(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u> <u>④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안전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18